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22

발의연월일: 2020. 7. 13.

발 의 자: 한무경・김영식・金炳旭

김도읍 • 권명호 • 서일준

이철규 • 권성동 • 유한홍

조명희 · 김정재 · 양금희

김승수 · 이만희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고용여성에 대한 인건비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나 이는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와 함께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20 19년 조사기준 169만 9천여 명)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이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해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 문제가 매우 심각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 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요건을 삭 제하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1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 복귀자의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0년"을 "202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을 "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 2호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 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 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3년-----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 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 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서 공제한다. 1.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1.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 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 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 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임 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u>3년</u>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3. (생략)
- ② ~ ⑥ (생 략)

2
1 <u>년</u>
3. (현행과 같음)
⑦ ~ ⑥ (혀해과 간으)